공

10

11

12

## 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_	
람	



제 1407 호 2023. 6. 22.(목)

#### 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-122호[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고시]··

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-880회[공 시 송 달 공 괴··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-885회[공인 등록 및 폐기]··

○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 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

☞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 → 구정소식 → 공고 → 북구공보

회 람

발행 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: 미디어정보과(☎241-7125, 행정7125)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 - 114호

# 하천점용 허가(협의) 고시

「하천법」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6월 19일

#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성명	울산광역시 북구청장 (도시과)								
주소	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								
점 <b>용</b> 위치	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820-7, 804-12, 802-7, 228-6번지	하천의 명칭	연암천						
점용 내용	보행데크 설치	점 <del>용</del> 면적	<b>290</b> m²						
점용 기간	2023. 6. 19. ~ 2099. 12. 31.								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 - 116호

#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(신고) 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제7항에 따라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(신고)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6월 22일

#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#### □ 승인(신고) 고시내역

신고승인 년월일	승인 번호	피 <sup>5</sup> 성 명	위가자 주 소	점용장소	면적 (m²)	착공예정 일	준공예정 일	공사내용
, 236.19	제2023-2호	울산북구청 농수산과	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	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5-1 번지 일원	350	2023. 6.19.	2023. 8.13.	태풍 피해로 인한 파제벽 설치

# 도시계획시설(매곡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) 사업 실시계획(변경) 고시

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928-2번지 도시계획시설(매곡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) 사업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(변경)작성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.

2023년 6월 22일

#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(변경없음)

가. 종류: 주차장 / 근린생활시설

나. 명칭: 도시계획시설(매곡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)사업

2. 위 치: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928-2번지 (변경없음)

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

가. 토지조서 (변경없음)

토지소재	지 번	지 목	단 위	면적	편입면적	비 고
울산광역시 북 구 매곡동	928-2	주	m²	1,263.40	1,263.40	
계					1,263.40	

#### 나. 건물조서 (변경)

		주차전용 건		
개	요	요 주시설 부대/		합 계
		주차장		
면 적	당초	1,115.89	477.51	1,593.40
면 적	변경	1,147.87	491.20	1,639.07

다. 시설물조서(변경)

	건 물 별	변 건 축 면 적(m²)						
층 별		주차장	근린생활시설	합계	비고			
지상 1층	당초	1,115.89	8.32	1,124.21	변경없음			
1층	변경	1,115.89	8.32	1,124.21	也么敢古			
지상 2층	당초	-	469.19	469.19	변경			
2층	변경	31.98	482.88	514.86	년/8			
ᅰ	당초	1,115.89	477.51	1,593.40				
계	변경	1,147.87	491.20	1,639.07				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(변경없음)

가. 성명: 윤경호

나. 주소: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207, 101동 502호(신정동 월드 메르디앙)

5. 사업기간: 2023. 5. 11. ~ 2024. 12. 31. (변경없음)

6. 수용할 토지·지번·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(변경없음)

: 붙임 명세서와 같음

- 7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: 해당 없음
- 8.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(☎ 052-241-799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수용·사용할 편입 토지의 세목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

번	번 호 (매곡동) 목		대장 면적	편 입 '	면 적(m²)	소 유 자		
호			他们 (m²)	부지 계		명 성	주 소	
1	928-2	주	1,263.4	1,263.4	1,263.4	윤경호	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207, 101동 502호	
	계		1,263.4	1,263.4	1,263.4			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-118호

# 하천점용 허가(협의) 고시

「하천법」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6월 20일

#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성명	울산광역시 북부경찰서(정보안보외사과)		
주소	울산광역시 북구 화동로 67 (화봉동)		
점용 위치	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932-4번지	하천의 명칭	신명천
점용 내용	안보 홍보 입간판 설치	점용 면적	<b>1.28</b> m²
점용 기간	2023. 6. 20. ~ 2099. 12. 31.		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 - 119호

# 도시계획시설(주차장 161호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
보

북구 송정동 1156번지의 도시계획시설(주차장 161호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 및 제8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에따라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6월 22일

#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종 류: 도시계획시설(주차장 161호)사업

나. 명 칭: 송정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

- 2. 위 치: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1156번지
- 3. 사업규모: 주차장 조성(64면) A= 1,864m²
- 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 명: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나. 주 소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

5. 사업기간

가. 실시계획인가일 ~ 2023. 12. 31.

- 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: 붙임 명세서와 같음
- 7. 열람기간: 공보 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
- 8. 열람장소: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
- 9.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(☎052-241-798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울산광역/ 북- 중산동	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														
번호	소 재 지	지번	지목	대장면적 (m²)	편입면적 (m²)	지분	소	유	자			관계인			비고
							,	성 명		주 :	소	성 명	주 소	권리관계	
1	송정동	1156	차	1,864.1	1,864.1		울신	산광역 북구	시						
합 계				1,864.1	1,864.1										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 - 121호

# 공유수면 점・사용 협의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완료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23년 06월 22일

##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#### □ 고시내역

청이	협	의자		면적		
협의 번호	성 명 (생년월일)	주 소	점용장소	(m²)	협의기간	점용목적
제2023 -6호	울산북구청 농수산과	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	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367-16번지 일원	3,500	'23. 06. 21. - '23. 08. 30.	산하해변 물놀이장 운영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 - 122호

# 공유수면 점용・사용 허가 고시

「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6월 22일

##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#### □ 고시내역

허가	피ㅎ	· 기가자	7) () 7) <i>)</i>	면적	-1-1	ᆲᄼᄆᆲ	
허가 번호	호 성명 주:		점용장소	(m²)	기간	점용목적	
제2023 -4호	동남해안 해상풍력㈜	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산하4로 21(산하동)	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정자항 인근 해역	7,828.9	′23. 09. 01. ~ ′26. 08. 31.	기상 측정용 라이다(LiDAR) 부이 설치 해역 주변의 풍황, 풍속, 풍향 등을 장시간 관측하기 위함	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 - 880호

## 공 시 송 달 공 고

「건축법」제11조 및 제14조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「건축법」 제79조, 제80조 규정에 의거 행위자(관리자)에게 위반건축물 이행촉구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3년 6월 20일

#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1. 공고내용 : 위반건축물 이행촉구 통지 및 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2. 공고기간 : 2023. 6. 20. ~ 2023. 7. 5. (15일)

3. 공고장소 : 울산광역시 및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, 게시판

4. 공고대상

연 번	위반건축물 위치	건축주	위반내용	처분내용	이행강제금 부과(예정)금액(원)
1	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484-81	<b>ᡥ</b> **	무단증축	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이행촉구 통지	-

- 5. 관련법규 : 「건축법」제11조, 제14조, 제79조, 제80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
- 6. 기타사항
  - 위 공고 내용은「행정절차법」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 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.
  -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 ☎052-241-80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 - 885호

## 공 고

「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」제9조에 따라 등록 및 폐기 공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6월 22일

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#### 1. 등록 공인 내역

연번	공인명	등록사유	등록일자 (사용개시일)	인영	비고
1	울산광역시북구 고향사랑기금운용관인	고향사랑기금 운용	2022. 6. 22.		
2	울산광역시북구 고향사랑기금출납원인	고향사랑기금 운용	2023. 6. 22.		

#### 2. 폐기 공인 내역

연번	공인명	등록사유	폐기일자	인영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인 (민원사무전용)	마멸로 인한 재등록	2023. 6. 22.	STORE OF THE PARTY	